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44765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나4476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3가단125504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B

변론 종결 2017. 11. 16.

판결 선고 2017. 12. 21.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3가단125504 판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서울

중복된 답장을 제거하지 상위에 () 부분 표시를, 2, 4,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종원

판사나경

판사양소은

별지